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20-학인-00010 체벌 등 인권침해

신 청 인 ○○○(피해자 1., 2. 母)

피 해 자 1. □□□, 2. ◇◇◇, 3. ▣▣▣, 4. ▤▤▤, 5. ▥▥▥▥,  
6. ▦▦▦ (○○○○학교 ○-○ 학생들)

피 신 청 인 ◎◎◎(○○○○학교 ○-○ 담임교사)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은 피해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신분상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교관리자들은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폭력)을 하였다는 것을 인

지하였을 경우, 학생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 등 상당한 주의 및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학교 관리자는 민원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마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 학생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재발 방지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체벌 등 교사의 폭력은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교사 연수, 교육 등 포함)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라. 해당 학교 ○학년 ○반 학생들이 교사의 일상적인 체벌 및 폭언에 노출되었으므로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당 학생들이 교사의 일상적인 체벌 및 폭언에 노출되었으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2020. 12. 1.(화)

나. 신청인: ○○○(피해자 1., 2. 母)

다. 피해자: 1. □□□, 2. ◇◇◇, 3. ▢▢▢, 4. ▮▮▮, 5. ▯▯▯▯  
6. ▯▯▯<sup>1)</sup> (○○○○학교 ○-○ 학생들)

다. 피신청인: ◎◎◎(○○○○학교 ○-○ 담임교사)

라. 신청요지:

1) 2020. 5월 개학 이후 피신청인이 학생들을 수시로 때린다는 사실을 아들인 피해자 1.에게 듣고 피신청인의 체벌 내용을 기록하였다. 같은 해 6. 24.경 피신청인이 학생을 때린 사실을 학교 교감에게 익명 전화로 알렸다.

2) 교감선생님에게 알렸으나 11월까지 피신청인이 수시로 피해학생들의 등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학생들에게 “바보”라고도 하였다.

## 2. 관련규정

[붙임] 과 같다.

## 3.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과 피해자 1.의 주장

1) ○-○ 담임교사인 피신청인이 2020년 5월 27일 등교하고 얼마 되지 않은 날부터 피해자 3.을 수시로 때렸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학생들을 수시로 때린다는 사실을 피해자 1.에게 듣고 피신청인의 체벌 내용을 6.18.경부터 기록하였다.)

2) 2020. 6. 24.경 학교 관리자인 교감에게 전화하여, 피신청인의 체벌 사실을 알렸다.

3) 신청인이 교감에게 피신청인의 체벌 사실을 알린 후에도 피신청인이 학생을 체벌하고, '바○, 명○이'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4) 신청인이 기록한 피신청인의 체벌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생략

### 나. 피신청인 주장2)

1) 문답서(2020. 12. 7.) - 생략

2) 진술서(2020. 12. 31.) - 생략

## 4.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학교 생활규정 제5조도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나. 인정사실과 판단

### - 생략

피신청인은 2020년 5월 이후 11월까지 수시로 손으로 피해학생들의 머리와 등을 체벌하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하게 하였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급의 학생들이 폭력에 길들여지는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학급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너 잘못했지?”라는 의미로 꾸지람 받는 학생에게 악의 없이 “이놈의 새○”라는 말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꾸지람을 듣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새○”라는 단어는 욕설, 비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 이를 들은 학생들은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체벌하고, 욕설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 다. 소결

2020년 5월 말경 피신청인의 체벌과 관련하여 피해자 5.의 학부모와 피신청인의 상담이 있었고, 피해자 5.의 학부모는 학생 체벌에 대해 사과를 하는 피신청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 체벌은 안 된다고 말하였다.

약 1개월 후 신청인이 학교관리자인 교감에게 피신청인의 체벌 관련하여 전화 통화하였고, 학교관리자(교감)는 피신청인에게 절대 체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 체벌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항의성 면담과 학교관리자의 주의 조치 면담이 계속 되는 경우, 교사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11월까지 재차 학생들을 체벌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대상이 ○○○○학교 ○학년 학생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인권 감수성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자 1.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을 체벌하였고, 학생 체벌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항의와 학교관리자에 의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체벌 행위를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하였으므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학교관리자들이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폭력)을 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학생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재발 방지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 체벌이 교사 개인만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과 학교는 일상적인 체벌의 대상이 ○○○○학교 ○학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협의하여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학교 ○학년을 비롯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벌 및 폭언은 고학년 학생들과 비교하여 그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전라북도내 다른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29.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 [붙임 ]

### 관련 법령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